1. 용도지수 적용에 대한 질의

【질 의】

회원제골프장 ○○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회원제골프장 ○○의 용도지수 적용에 있어서 다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갑설】

○○에 대한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이므로 "2002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2.적용지수 나.용도지수의 용도번호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용도지수로 일괄 적용한다.

【을설】

○○에 대한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2002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2.적용지수 나.용도지수의 용도번호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각 시설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잘의 1. 상기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또는 이와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지.

질의 2. 【을설】이 타당하다면 ○○내의 용도 중 2002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2.적용지수 나.용도지수의 용도번호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에 해당하는 기준은.(예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별표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에 의해 설취된 시설(용도)로 본다"등.)

회 신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적용요령>에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회원제골프장내 ○○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되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만 단층특수건물에 대한 가산율적용은 관련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환급여부

【질 의】

1) 질의 내용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용지를 공급받아 95년 4월에 대금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전에 해당 시에 용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 납부한 제세공과금 중 기부채납지의 등록세 및 취득세 환급받을 수 있는 여부.

2) 기초현황

가. 용지매매계약일 : 1994. 8. 19

나. 대금 완납일 : 1995. 4. 21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1995. 4. 26

라. 소유권이전접수 : 1996. 2. 16

마. 제세공과금 납부일 : 1996. 3.

바. 기부채납면적 확정 : 2002. 4. 14

3) 환급받고자 하는 사유

최초 등록세 등을 반부한 후 5년 경과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 등록세 등을 납부 당시에는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부분을 명시한 것은 있으나 이는 예정지로서 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고
- 2002년에 비로서 기부채납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결과 면적이 확정됨
- 따라서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2002년에 감면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

처리 할 수 있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이후 등기이전에 기부채납이 결정된 경우라면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예정지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여 과오납이 된 경우로서 등록세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과오납에 대한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질 의】

1. 본 법인은○○ 디지털 정보 통신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2001년 7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학원 설립허가를 받았음.
2. 본 법인의 이사 김○○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도 ○○시 ○○동 386소재의 대지 330㎡, 위 지상 건물 285.6㎡를 본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 출연하여 2001년 12월 18일 본 법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3. 그러나, 상기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바, 상기 부동산 평가 상당액(약 6억원)을 현금으로 대체하고자 2002년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 승인 신청을 하였음.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2년 5월 17일 상기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
5.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금액에 대한 공동 예치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2년 6월 21일 교부 받음.
6.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예치한 402백만원과 대체금액 600백만을 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공동 예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전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

이상과 같이 김○○ 소유의 부동산을 교육용 목적으로 무상 출연하여 △△학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현금으로 대체 출연하여 다시 원 소유자인 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 의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및 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다시 원 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3누 11319, 1993.9.14참조)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4호 규정의 공동주택에 대한「복층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층과 하층의 면적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도 「복층형」으로 보아 연면적이 274㎡ 이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구분 \ 유형		유형I	유형II
전용 면적	상층	8.69	6.78
	하층	265.17	266.99
	합계	273.86	273.77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하층면적이 265.17제곱미터로서 고급주택 해당면적인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상층면적이 8.69제곱미터에 불과하다면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것은 과세권자가 건물의 형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 지방세비과세 여부 질의

【질 의】

(구)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09호('97.12.26)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부지에 [사업시행자 : 한국○○(주)]

- 국도 31호선 일부구간이 편입되어(이하 "편입국도"라 한다) 향후 국도로 계속 사용함이 불가능하고
- 원전 건설공사 진행시 편입 국도 구간(○○시 ○○리 - △△시 △△리, 4km)의 통행이 단절되므로

이에 따라 편입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국토관리청)과 합의를 거쳐

- 현재의 편입국도에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원전건설부지 외곽으로 이설후
- 관리청(국토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이하 "이설국도"라 한다)
- 편입국도는 관리청(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키로 하였음

이 경우 편입국도에 대체하여 국토관리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설하는 이설국도의 공사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등의 지방세(취·등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의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원전건설사업부지에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 귀사가 이 편입된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를 건설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원전건설사업부지에 편입된 도로는 국가가 귀사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교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아니합니다.

6.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질 의】

○○교회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동 제94조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시 ○○면 ○○리 179의 6 외 필지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한 후, 같은 울타리안에 위 법 제107조 제1호에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속건물(용도 : 목회자들 사용의 사택 79.95㎡, 교회부속무료유치원 467.80㎡, 교회 19.25㎡, 창고 15.18㎡)을 추가로 신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목회자들 사용의 사택 79.95㎡와 교회부속무료유치원 467.80㎡가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비과세가 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교회의 같은 울타리내에 부속건물(교회, 창고, 사택, 부속무료유치원 등으로 사용)을 신축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7.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 의】

대도시안의 공장(10년, A제품류,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지방에 있는 지점공장(5년 甲제품류, 지점등기)과 동일한 지번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이전을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115조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방지역 중 지점공장과 동일한 지번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은 지점공장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감면적용에서 제외되는지, 필히 이전하는 곳이 지점공장을 제외한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감면적용이 되는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

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세부감면요건은 동법시행규칙 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한 경우라면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나 세부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8. 연부취득중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세환부에 대한 질의

【질 의】

1. 매입경과

'94.5月 계약체결

'94年 1, 2회 중도금 지급 및 취득세 납부

'95年 3~6회 중도금 지급 및 취득세 납부

'96年 7~10회 중도금 지급 및 취득세 납부

'97年 11~14회 중도금 지급 및 취득세 납부

'02년6月 경개계약 체결

2. 기납부 세금 : 총 2.4億('97년 이전 납부분 1.8億)

3. 질의사항

경개계약에 따라 본인은 기납부 취득세등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고자 하나 납부후 5년이 경과한 세금에 대하여는 환부의 의무가 없다는 관청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지방세법운용세칙 105-5 제2호에서도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계약자와 과세관청과의 조세채무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계약이 인수된 시점으로부터 장래에 한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전자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세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지방세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시기 즉 각 연부금

지급시로 볼 수 있고, 후자로 보는 경우에는 경개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제30조의5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본인의 의견은 '취득세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본인과 기존 계약자간에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 있어서는 아직 발생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고, 경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권리"가 생기지도 않았던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겠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취득세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세관청의 입장처럼 각 연부금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한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경개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인은 기납부한 취득세 전액을 경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취득세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30조의 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에 대해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취득세 환부시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경개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되는 것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9.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관련 질의

【질 의】

상기인은 ○○구 ○○동 126-2 답172㎡와 같은곳 126-3 답 2,063㎡를 본인외 2인등이 1986년 10월에 매입, 현재까지 토지세를 납부하여 오던중 2001년 10월 ○○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산 2단계 주차장 조성공사)으로 위 토지를 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1차적 보상협의 요청이 있어 2001년 11월 20일 공공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 17일 농지에 준한금 417,945,000원을 보상받고 2002년 5월 22일 대체취득에 따른 토지수용 확인서를 발급받아(△△구 △△동 376-16호)동년 5월 27일 △△구청에 대체취득비과세 신청을

하였는바 동월 29일자 반려하기에 귀부의 해석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본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써 2001년 1월 ○○구청으로부터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안내서도 받은바 있으며 농지에 상응되게 보상도 받았습니다. 한데 보상해준 구청에서는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면 당연히 비과세 된다고 하고 취득 물건지 구청에서는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인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매수된 부동산이 농지인지 여부, 당해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수용된자의 실제거주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0. 분양권을 양수받은자가 자가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질 의】

① 아파트 일반분양시 분양가액 114백만원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1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84백만원에 전매하였으며 이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 나머지 잔금 23백만원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것이 되는지요?

(갑설) : 107백만원 ☞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을설) : 114백만원 ☞ 아파트건축업자가 아파트대금으로 영수한 금액

② 아파트 일반분양시 분양가액 114백만원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1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95백만원에 전매하였으며 이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 나머지 잔금 23백만원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것이 되는지요?
(갑설) : 118백만원 ☞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을설) : 114백만원 ☞ 아파트건축업자가 아파트대금으로 영수한 금액

회 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 등에 의거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권의 매수자가 법인인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회사에 최종잔금을 지급함으로서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1. 취득세감면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장례예식장)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직접 감면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병원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장례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장례업에 사용케 한 경우라면 그 해당부분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매매계약의 해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 신청에 의한 말소와 판결에 의한 말소의 두 경우가 있음), 말소등기 전에 고지받은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금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34조내지 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

【질 의】

본인은 1992년부터 한우를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IMF 및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2000년 농가부채로 인하여 부득이 한우를 처분하였습니다.

그이후 2001년 1월 임대하여 쓰던 축사를 매입하여 한우 입식 기회를 보고 있으나 한우가격 폭등과 현재 구제역 파문으로 아직까지 한우를 입식하지 못하고, 벼농사와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며 한우 입식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 기타 축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농기계 등을 축사 안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지출장확인결과 한우를 입식하지 않고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베일러, 측정기 등)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에 의거 감면분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예고 하였으며(2002. 4. 18) 이의가 있을 시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토

록 하여 본인이 ○○시를 방문(2002. 5. 17)하여 문의한 결과 위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 납입고지서를 통지한바 더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축사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축사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